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항만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221번지) 내 무단점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05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고 명 : 항만시설(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221번지) 내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19. ~ 2020. 6. 2.(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붙임

- 무단점유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내용과 같이 점유물을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반출 시 우리 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합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최인영, 전화 063-467-61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현장사진 1부. 끝.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0-00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0년 5월 6일(항만물류과-2526호) 귀하 소유의 아래 폐기물(컨테이너 포함) 등을 2020.5.11까지 자진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0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

위 치	대 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221번지 (항만부지)	폐기물 (컨테이너 포함)	1식	폐기물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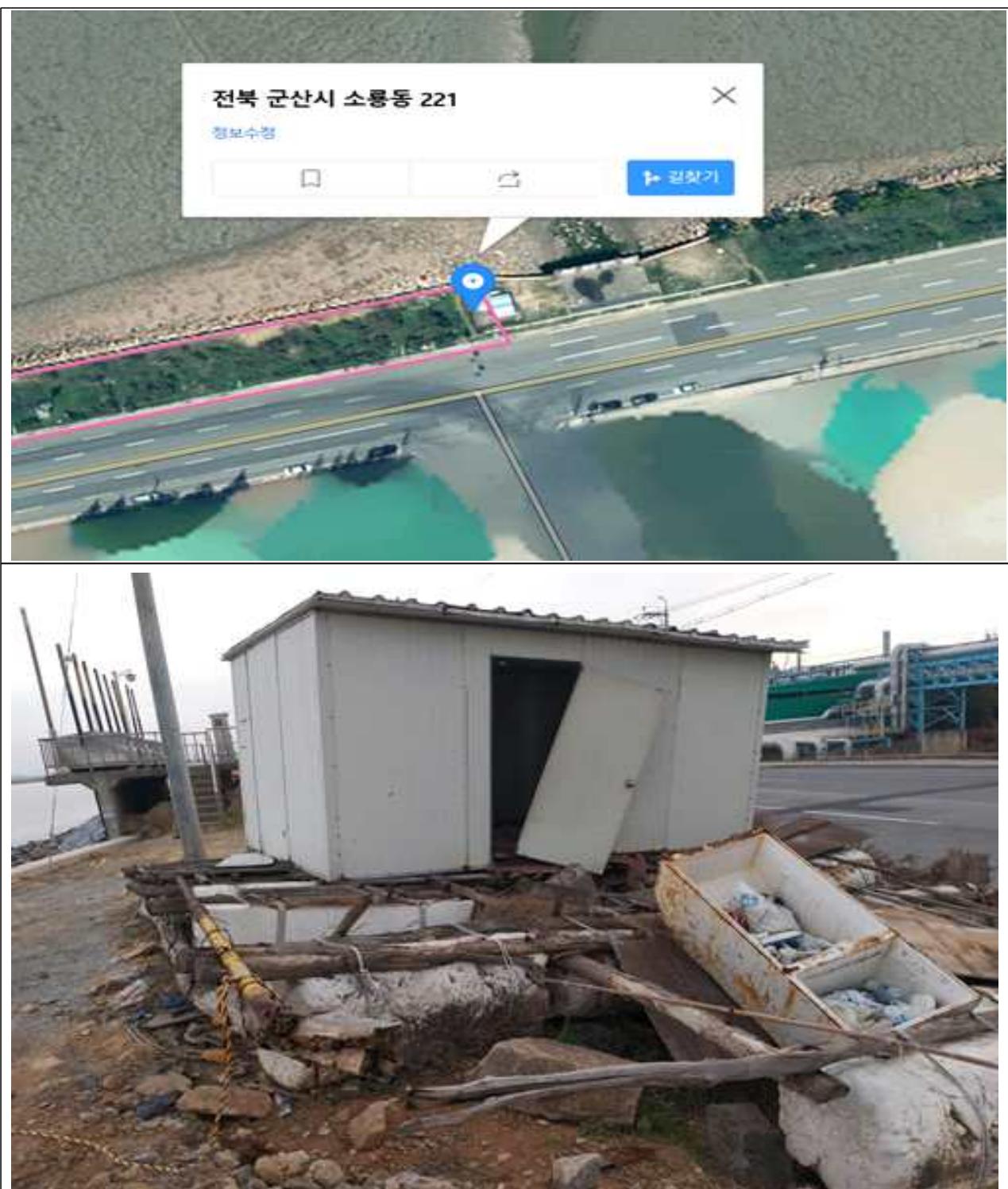
2020 년 5 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붙임 2

무단점유물 위치 및 현장 사진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221